

제15호(2016. 7. 28.)

한·콜롬비아 FTA 발효,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시사점

조성주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경과 및 결과	1
2. 농축산물 분야 한·콜롬비아 FTA의 파급영향	5
3. 요약 및 시사점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한석호 연구위원	061-820-2279	shohan@krei.re.kr
내용 문의	조성주 부연구위원	061-820-2376	sungjucho@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2009년 12월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FTA 1차 공식협상이 시작된 후,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FTA 최종 타결
 -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2016년 7월 15일에 발효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우리나라는 총 1,494개 농축산물 세번 중 37.8%에 해당하는 565개 세번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쌀, 참깨, 인삼 등 150개 민감품목 세번(품목비중 10.0%)은 양허에서 제외
- 콜롬비아는 쌀 관련 품목, 일부 쇠고기 관련 품목, 우유·크림 등의 낙농품, 마늘, 양파, 오렌지 등 47개 세번(품목비중 5.3%)은 양허 제외
 - 조란, 사과, 배, 밤 등 49.6%에 해당하는 439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 농축산물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되거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으로 타결되어, 농축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對콜롬비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81.5%를 점유하는 커피를 제외한 다른 농축산물 수입량은 크지 않음
 - 쇠고기, 분유 등의 축산물은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된 실적이 없고, 양허 수준이 낮음
 - 바나나를 포함한 열대과일류의 수입실적이 일부 존재하지만 비중이 매우 작음
 - 사탕수수/무 당 및 자당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수입물량도 매우 적음
- 다만, 콜롬비아 철화류의 관세 철폐(기타철화 7년, 장미 5년, 카네이션 3년)로 인한 수입 증가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콜롬비아산 철화류의 수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 특히 콜롬비아산 기타 철화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수입물량도 가장 많음
- 수출 유망품목인 알로에, 홍삼 음료 등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관세 즉시 철폐는 관련 품목의 중장기적인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2010~2014년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對콜롬비아 수출량은 17만 리터에서 220만 리터로 꾸준히 증가
 -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인 우리나라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 발효

1. 한·콜롬비아 FTA 협상 경과 및 결과

1.1. 협상경과

□ 2009년 12월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FTA 1차 공식협상이 시작된 후,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FTA 최종 타결

- 한·콜롬비아 FTA 5차 협상 이전까지 양측의 관심품목 양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난항을 겪었으나, 5차 협상에서 양측은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여 6차 협상까지 대부분 합의하고, 이후 7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함.
 -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원유, 니켈 등) 확보 및 중남미시장 선점 차원에서 접근하였음.
 - 민간공동연구(2009. 3~8.) → 1차 공식협상(2009. 12., 서울) → 2차(2010. 3., 보고타) → 3차(2010. 6., 서울) → 4차(2010. 10., 칼리) → 5차(2011. 10., 서울) → 6차(2012. 4., 카트라헤나) → 7차(2012. 6., 서울)
 - 5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분야인 상품양허 협상의 진전 계기를 마련함.
 - 6차 협상까지 상품양허 및 각 협상분과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최종 타결 패키지안을 마련하여 7차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름.

□ 2013년 2월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협정문 발효조항에 따라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콜롬비아 통보문 접수일 기점으로 30일 후인 2016년 7월 15일에 발효

-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고, 콜롬비아는 2016년 6월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 측에 통보하였음.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주력 수출 공산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 및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철폐하고, 수출 유망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 의료기기(관세율 5%)는 즉시 관세 철폐됨.
- 수출 유망품목 중 알로에, 홍삼 등의 기타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도 즉시 관세가 철폐됨.



(한국) 농축산물 중 565개(품목비중 37.8%)는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민감품목 150개(10.0%)는 양허제외

1.2.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협상결과

□ 총 1,494개 농축산물 세번(01~24류 포함, 03류 제외) 중 37.8%에 해당하는 565개 세번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 특히 16년 철폐 품목이 247개 품목으로 농산물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한·미, 한·EU FTA 등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양허하였음.
- 쇠고기(2개 세번) 및 만다린(1개 세번)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각각 19년 및 20년으로 적용함.
 - 발동수준/관세율: (쇠고기) 1년차 9,900톤/40.0% → 19년차 14,140톤/24.0%
(만다린) 1년차 7,223톤/144.0% → 20년차 10,522톤/86.4%
 - 적용품목 HSK: (쇠고기) 0201.30.0000, 0202.30.0000
(만다린) 0805.20.9000
- 콜롬비아가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방함.
 - 쇠고기 5개 세번 중 꼬리, 족 등 냉동설육 3개 세번은 19년 철폐로 양허하였음.
 - 탈·전지분유 5개 세번에는 TRQ 100톤을 제공하였으나 TRQ 추가 증량이 없으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콜롬비아도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쌀, 참깨, 인삼 등 150개 민감품목 세번(품목비중 10.0%)은 양허에서 제외

-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은 높은 보호 수준으로 양허되었음.
- 즉시 철폐 및 5년 이하 단기철폐 품목(세번 비중 46.7%)들은 01류 산동물, 05류 기타 식물성 생산물, 12류 유지작물 및 인삼, 15류 동물성 유지, 20류 이하의 조제식료품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직접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임.

관세철폐율은 기 체결 FTA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우리 농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아님

표 1. 한·콜롬비아 FTA의 대한민국 농축산물 양허 현황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13년 철폐	15년 철폐	16년 철폐	19년 철폐	TRQ	양허 제외	합계
01류	16	1	33	0	2	0	0	0	4	0	0	0	56
02류	2	2	2	4	32	6	2	0	23	5	0	19	97
04류	0	0	4	0	15	4	0	0	22	0	5	15	65
05류	28	1	27	1	7	0	0	0	4	0	0	0	68
06류	0	2	47	2	25	0	0	0	0	0	0	0	76
07류	1	0	15	8	55	1	0	1	37	0	0	16	134
08류	0	0	6	14	24	1	0	0	14	0	0	19	78
09류	6	0	23	0	3	0	0	0	5	0	0	2	39
10류	10	2	0	0	5	0	0	0	5	0	0	10	32
11류	0	4	2	0	4	0	0	0	23	0	0	14	47
12류	42	20	37	3	5	0	0	0	8	0	0	21	136
13류	3	0	15	0	1	0	0	0	5	0	0	3	27
14류	2	0	8	1	10	0	0	0	0	0	0	0	21
15류	21	4	50	1	13	0	0	0	12	0	0	1	102
16류	1	13	32	19	10	0	0	0	12	0	0	5	92
17류	8	1	10	0	7	0	0	0	6	0	0	1	33
18류	1	13	13	0	3	0	0	0	0	0	0	3	33
19류	3	0	30	0	9	0	0	0	3	0	0	7	52
20류	1	0	20	15	29	1	0	1	32	0	0	11	110
21류	2	5	38	6	14	0	0	0	5	0	0	2	72
22류	1	2	31	2	4	0	0	0	12	0	0	0	52
23류	18	17	1	1	2	0	0	0	7	0	0	1	47
24류	0	0	0	0	15	0	0	2	8	0	0	0	25
합계	166	87	444	77	294	13	2	4	247	5	5	150	1,494
비중	11.1%	5.8%	29.7%	5.2%	19.7%	0.9%	0.1%	0.3%	16.5%	0.3%	0.3%	10.0%	

주: HS 01~24류 포함, 03류 제외

자료: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부속서 2-가, 대한민국 양허표)

□ 기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수준과 비교하면, 관세철폐율은 약 90%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미(98%) 및 한·EU FTA(91.5%)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한·칠레(70.5%), ASEAN(70%) 등과의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됨.
 - 커피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고 실행세율이 2%로 매우 낮으며 칠레, 미국, EU, 콜롬비아 FTA 모두에서 즉시철폐로 양허하였음.

(콜롬비아) 농산물의 49.8%의 세번은 즉시철폐

- 장미는 미국 및 EU FTA에서는 즉시철폐, 칠레 FTA에서는 10년 철폐, 콜롬비아 FTA에서는 5년 철폐로 양허함. 한·콜롬비아 FTA에서 장미는 매년 5%p씩 관세감축을 하며 관세감축률은 연평균 20%임.
- 기타절화는 칠레와 미국 FTA에서 10년 철폐, EU와 콜롬비아 FTA에서는 5년 철폐로 양허함. 따라서 기타절화는 장미와 같이 매년 5%p씩 관세감축을 하며 관세감축률은 연평균 20%임.

1.3. 콜롬비아 농산물 분야 협상결과

□ 쌀 관련 품목, 일부 쇠고기 관련 품목, 우유·크림 등의 낙농품, 마늘, 양파, 오렌지 등 47개 세번(품목비중 5.3%)은 양허 제외

- 주요 육류 및 유제품 등 전체 농산물(01~24류 포함, 03류 제외) 885개 세번의 32.3%에 해당하는 286개 세번은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음.
 - 특히 쇠고기(뼈 없는 것), 닭고기, 분유·치즈 일부 낙농품, 사탕무당 등은 15년 이상 장기 철폐하였음.
- 조란, 사과, 배, 밤 등 49.6%에 해당하는 439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의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즉시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였음.
- 콜롬비아는 주요 곡물류 등의 가격 급등락 방지를 위해 안데스 가격밴드(APB)¹⁾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나, 고정관세는 양허기간에 따라 철폐하기로 함.
 - 콜롬비아의 기 체결 FTA(캐나다, EU)에서도 동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쌀·보리 등 식용 곡물류, 사료용 옥수수,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대두, 대두유/팜유 13개 농산물(87개 세번²⁾) 품목에 적용함.

표 2. 한·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농축산물 양허 분류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15년 철폐	16년 철폐	18~20년 철폐	TRQ	양허 제외	합계
합계	441	2	90	16	129	7	101	38	8	6	47	885
비중	49.8%	0.2%	10.2%	1.8%	14.6%	0.8%	11.4%	4.3%	0.9%	0.7%	5.3%	

주: HS 01~24류 포함, 03류 제외

- 1) 안데스 가격밴드(Andean Price Band: APB): 수입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만 가격 등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임.
- 2) 부속서에 35류 및 38류를 포함하여 총 92개 세번이 APB 제도의 적용대상임.

한국과 콜롬비아 간 농축산물 교역은 미미한 수준

2. 농축산물 분야 한·콜롬비아 FTA의 파급영향

2.1. 한국·콜롬비아 농축산물 교역 현황

□ 한국과 콜롬비아 간 농축산물 교역은 미미한 수준으로 수출은 거의 없고 수입이 교역의 대부분 차지

-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농산물 교역은 수입 위주임. 콜롬비아로의 수출은 거의 없으나 2010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4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33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510만 달러로 약 9,180만 달러의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표 3. 한국·콜롬비아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A)	17.8	32.5	74.1	121.7	80.5	71.4	95.1
수출(B)	0.2	0.1	0.6	1.2	3.2	2.4	3.3
무역수지(B-A)	-17.6	-32.3	-73.5	-120.6	-77.3	-69.1	-91.8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對콜롬비아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체 0.4%에 불과하며, 이 중 커피가 89% 차지

- 우리나라의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콜롬비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2000년 69억 달러에서 2014년 244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음.
 -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은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임.
 -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도 2000년 1,800만 달러에서 2012년 9,500만 달러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2010~2012년 평균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8,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0.4% 수준에 불과함.



콜롬비아산 농축산물 수입의 89%는 커피 관련 품목

표 4.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농축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평균	
세계	6,902	10,068	17,034	22,686	22,593	23,104	24,387	21,961	100.0%
미국	2,237	2,007	5,222	6,538	5,709	5,067	6,933	5,894	26.8%
중국	1,242	1,998	2,127	2,598	2,495	2,935	2,874	2,606	11.9%
호주	705	1,274	1,998	2,540	2,630	2,176	2,311	2,331	10.6%
브라질	194	572	988	1,068	1,661	2,419	1,630	1,553	7.1%
아르헨티나	63	267	450	520	914	1,074	354	662	3.0%
콜롬비아	18	32	74	122	81	71	95	89	0.4%

주: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까지의 합인.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축산물은 주로 커피, 우황, 절화, 사탕수수 등임.

- 그중 커피(HS 0901호)가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커피·차마테 혹은 볶음 치커리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HS 2101호)가 7.5%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커피와 커피 가공품이며,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
- 화훼류에서는 0603호(절화와 꽃봉오리 신선·가공 꽃다발·장식용)가 농축산물 수입의 3.3%를 차지하며, 우황은 2.6%, 사탕수수는 2.3%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음.

표 5. 우리나라의 콜롬비아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2014 평균	
농산물 전체	17.8	32.5	74.1	121.7	80.5	71.4	95.1	88.6	100.0%
커피류	0901호	16.9	27.3	65.7	108.8	61.1	48.3	72.2	81.5%
	2101호	0.5	0.3	3.5	5.3	9.8	8.4	6.6	7.5%
화훼류	0603호	0.0	0.0	0.8	1.8	3.2	4.1	2.9	3.3%
우황	0510호	0.0	1.7	1.5	1.6	3.5	3.4	1.5	2.6%
사탕수수	1701호	0.0	1.5	0.6	1.4	1.8	4.0	2.3	2.3%
기타 농산물		0.3	1.6	2.1	2.9	1.2	3.1	2.6	2.9%

주: 농산물 전체는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의 합인.

자료: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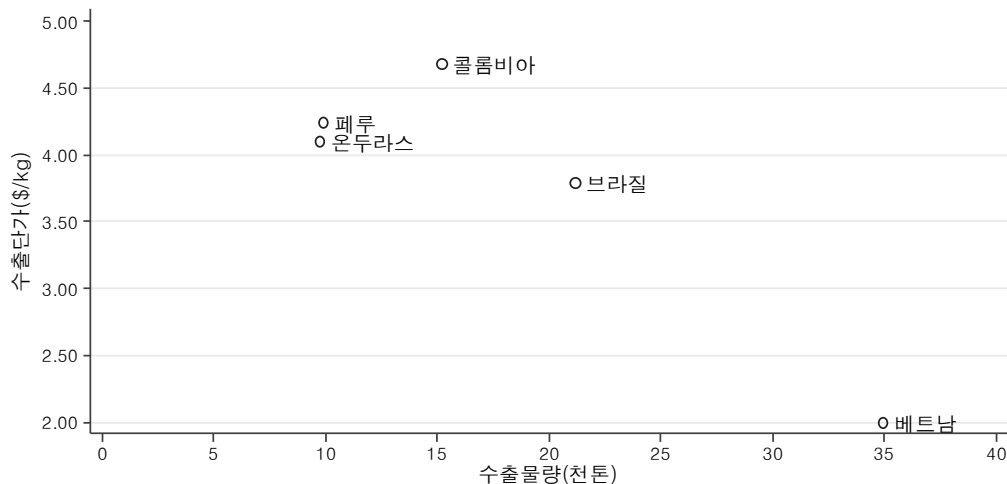
커피를 제외한 콜롬비아산 농축산물의 국내 점유율 확대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2.2. 품목별 파급효과 검토

□ 對콜롬비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88.6천 톤)의 81.5%(2010~2014 평균)를 점유하는 커피를 제외한 다른 농산물 수입액은 크지 않음

- 커피 관련 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즉시철폐로 양허함.
- 커피-볶지 않은 것(HS 090111)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온두라스 등임.
 - 베트남 커피는 수입량은 많지만 저가용 커피로 수입단가는 2.00달러/kg 수준임. 콜롬비아 커피는 고급커피로 수입단가는 4.67달러/kg 수준으로 다른 수입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원두 형태로 소비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우리나라의 커피-볶지 않은 것(HS 090111) 주요 수입국



주: 2010~2014년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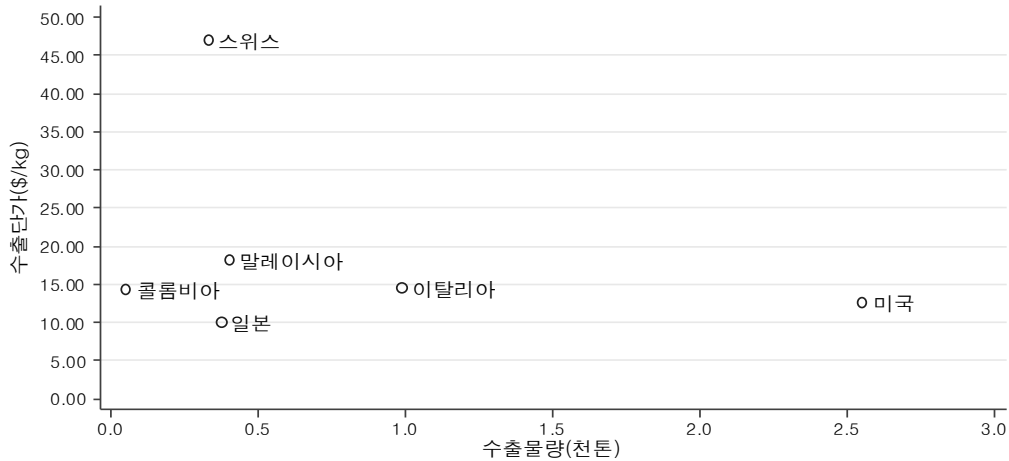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커피-볶은 것(HS 090121)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스위스 등임.
 - 콜롬비아산 볶은 커피의 수입량은 많지 않음. 볶은 커피는 커피의 주산지인 국가들에서 대형 브랜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기 때문임.



쇠고기, 분유 등 낮은 수준의 양허로 파급영향 최소화

그림 2. 우리나라의 커피-볶은 것(HS 090121) 주요 수입국



주: 2010~2014년 평균치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쇠고기, 분유 등의 축산물은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실적이 없음

- 쇠고기, 분유 등의 축산물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ASG 적용, TRQ 제공 등을 포함하여 낮은 수준으로 양허함.
-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는 관세양허와는 별도로 국내 수입에 필요한 수입위생조건(수입금지지역 해제) 절차가 필요함.
- 콜롬비아의 돼지고기(對세계 수출 0.5톤, 2010~2013년 평균), 닭고기(對세계 수출 2,733톤)의 경우 수출량이 미미하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음.
- 기타 탈·전지분유에 제공한 TRQ 100톤은 국내소비량(33,969톤, 2010~2014년 평균)의 0.3% 수준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등 기존 수입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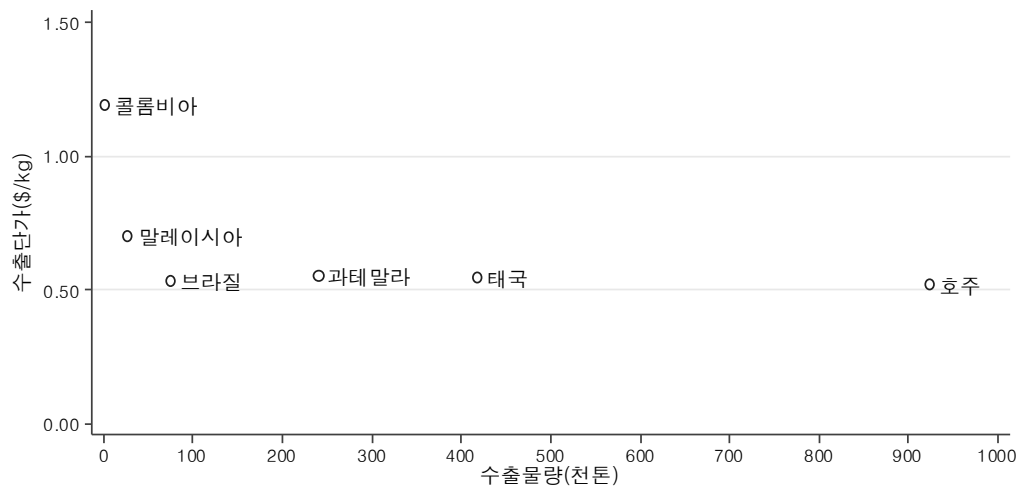
□ 바나나를 포함한 열대과일류의 수입실적이 일부 존재하지만 비중이 매우 작음(134톤, 2010~2014 평균)

- 바나나(HS 080300)는 5년 관세철폐로 합의하였으나 콜롬비아산 바나나는 필리핀산과의 경쟁이 쉽지 않음.
 - 국내 바나나 수입량(2010~2014 평균): 256천톤 (필리핀산이 97.5% 점유)

콜롬비아산 사탕수수당 및 바나나 등 열대과일의 수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콜롬비아산 기타 열대과실은 병해충 문제로 인해 수입금지되어 있는 상황임 (예외: 엘로우피타야).

그림 3. 우리나라의 사탕수수/무 당 및 자당(HS 1701) 주요 수입국



주: 2010~2014년 평균치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콜롬비아의 對세계 사탕수수/무 당 수출량은 763천 톤이며 전 세계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수출단가도 높아 향후 우리나라로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

- 고체 한정 사탕수수/무 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HS 1701) 중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네 가지 품목³⁾은 즉시철폐로 양허함.
 -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HS 170191)은 양허 제외, 기타(HS 170199)는 16년 장기 철폐 대상이나 기존 수입액이 크지 않음.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사탕수수/무 당의 주요 수입국은 호주, 태국,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임.
 - 전 세계에서 사탕수수/무 당은 브라질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25,796천 톤, 대세계 76.7% 비중)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는 0.48달러/kg임.

3) 즉시철폐 대상 품목 HSK: 1701.11.1000(당도 98.5도 이하 사탕수수당), 1701.11.2000(98.5도 초과 사탕수수당), 1701.12.1000(당도 98.5도 이하 사탕무당), 1701.12.2000(당도 98.5도 초과 사탕무당)

콜롬비아산 절화류 수입 확대로 인하여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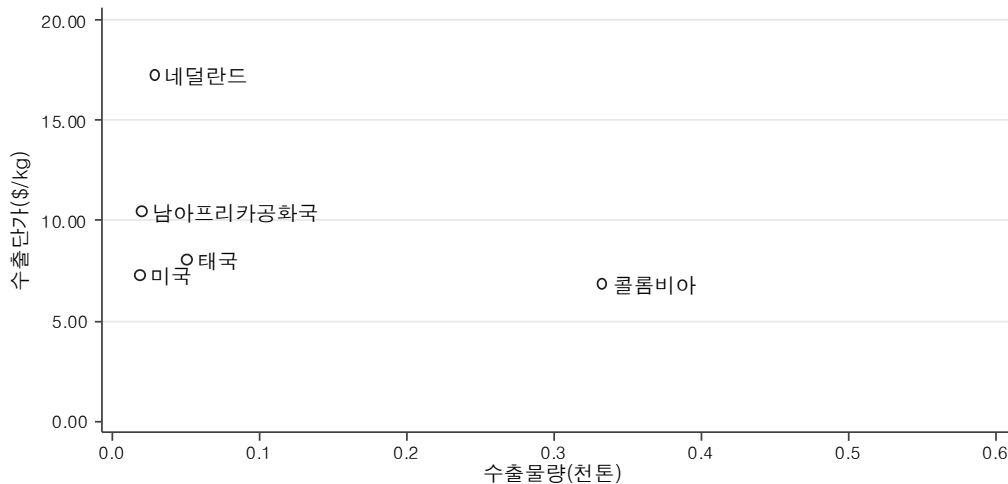
- 2010~2014년 평균 콜롬비아산 사탕수수/무 당 및 자당은 1.19달러/kg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고, 수입물량도 1.65천 톤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임.
 - 호주산 사탕수수당의 단가는 0.52달러/kg 수준에 923천 톤이 수입되고 있음.

□ 이미 높은 수입시장점유율을 가진 콜롬비아 절화류에 대한 관세철폐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화훼류의 경우 기타 절화(2010~2014 평균 수입액: 2,317천 달러), 기타 가공 절화(380천 달러), 카네이션(124천 달러), 장미(72천 달러) 등 콜롬비아 절화류가 수입되고 있음.
- 기타 절화(HS 060319) 및 기타 가공절화(HS 060390)는 7년, 장미(HS 060311)는 5년, 카네이션(HS 060312)은 3년 관세 철폐 대상임.
- 기타 절화 등은 국내 주요 재배 품목이 아니지만 최근 침체되어 있는 화훼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0~2014년 기준 콜롬비아로부터의 절화류(HS 0603) 수입액이 꾸준히 상승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수입국이 됨.
 - 절화류 수입액 변화(2010 → 2014): (중국) 3.6백만 달러 → 9.1백만 달러
(콜롬비아) 0.8백만 달러 → 4.6백만 달러
- 2010~2014년 평균 콜롬비아산 기타 절화는 6.85달러/kg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수입물량도 0.3천 톤 정도로 가장 많음.
 - 기타 절화의 주요 수입국은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임.
- 중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진 콜롬비아산 절화류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카네이션은 중국에서 수입량의 95.7%(228천 톤)를 수입하고 있으나, 장미는 콜롬비아에서 수입량의 31.4%(7천 톤)를 수입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알로에, 홍삼 등 유망수출품목 수출 향상에 기여

그림 4. 우리나라의 기타 절화(HS 060319) 주요 수입국



주: 2010~2014년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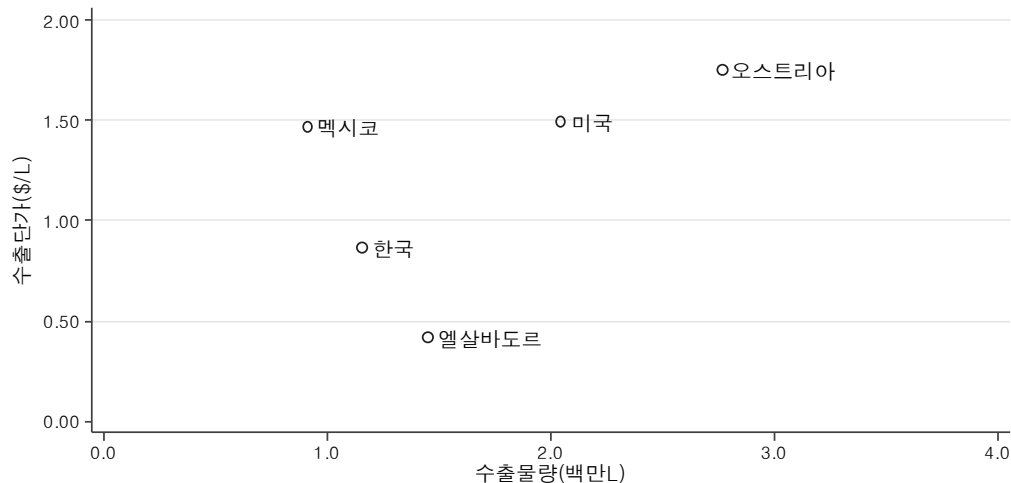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출 유망품목인 알로에, 홍삼 음료 등의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중장기적인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타 비알코올 음료(HS 220290)는 콜롬비아 양허표에서 관세 즉시 철폐 대상임.
- 콜롬비아의 알로에, 홍삼 등의 기타 비알코올 음료 주요 수입국은 오스트리아, 미국, 엘살바도르, 한국, 멕시코 등임.
 -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는 꾸준히 늘고 있음(수출량: 2010년 165천 리터 → 2014년 2,201천 리터).
- 한국의 기타 비알코올 음료의 수출단가는 0.87달러/리터 수준으로 오스트리아, 미국, 멕시코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전체 수출액(214백만 달러, 2010~2014 평균)의 약 0.5%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 있음.
 - 관세 철폐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산업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 유망품목인 알로에, 홍삼 음료 등의 중장기적인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FTA 발효로 인하여 커피 및 절화류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농업분야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그림 5. 콜롬비아의 기타 비알코올 음료(HS 220290) 주요 수입국



주: 2010~2014년 평균치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3. 요약 및 시사점

□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 관세 철폐 대상이므로 농업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콜롬비아와의 농산물 교역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커피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수입규모가 미미함.
 - FTA로 인하여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었으나,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 콜롬비아산 열대작물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수출단가나 수송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없어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쉽지 않음.
- 한·콜롬비아 FTA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하였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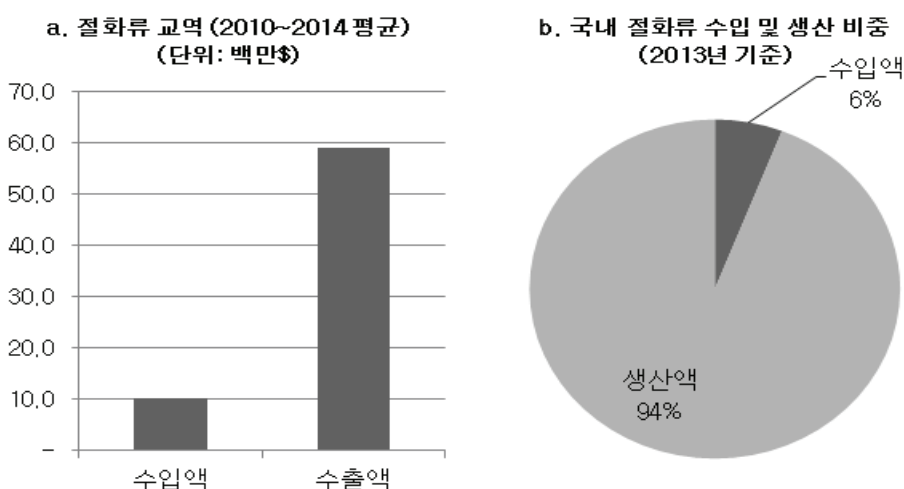
□ 콜롬비아로부터의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피의 경우, 직접적인 국내산업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타 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콜롬비아산 커피의 수입 증가는 소비대체로 인해 국내 녹차 생산농가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 최근 녹차 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커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녹차 생산농가에 소득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콜롬비아산 절화류 수입증가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화훼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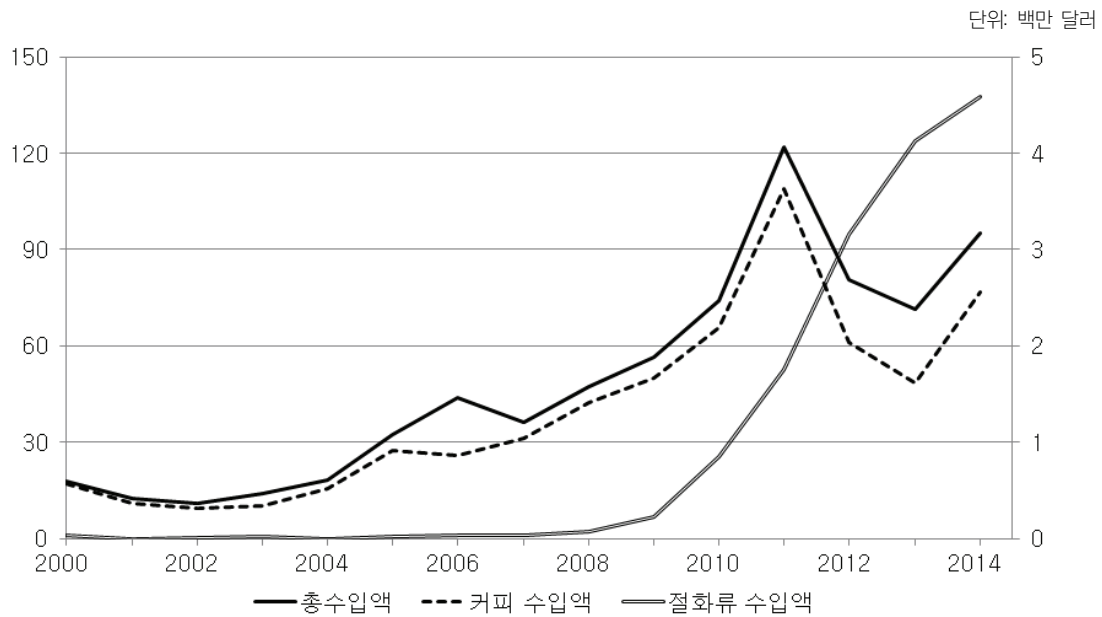
- 최근 콜롬비아로부터의 절화류 수입이 크게 증가(2000년 0.3만 달러 → 2014년 459만 달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절화류의 순수출국임.
 - 2010~2014년 평균 전체 절화류 수입액은 1,029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5,91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17%에 불과함.
 - 2013년 기준 국내 절화류 생산액 2.4억 달러(2,629억 원, 1,094.97원/달러 환율 적용) 대비 절화류 수입액 비중은 약 6% 수준(0.5억 달러)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화훼류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인 파급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기타절화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감축에 따른 콜롬비아산 절화의 가격하락으로 국산 절화의 소비가 일정부분 대체될 수 있음.

그림 6. 우리나라의 절화류 교역 및 국내 생산 현황



주: HS 0603호 포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그림 7. 콜롬비아산 농산물, 커피 및 절화류 수입액 추이



주: 왼쪽 세로축은 전체 농산물 수입액(HS 01~24류 포함, 03류 제외)과 커피 수입액(HS 0901호)을 나타냄.
오른쪽 세로축은 절화류 수입액(HS 0603호)을 나타냄.
자료: Global Trade Atlas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농축산물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알로에, 홍삼 등의 비알코올 음료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된 알로에, 홍삼 등의 농식품 수출은 콜롬비아에 우리나라의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남미 핵심 소비 시장이며 지리적 요충지인 콜롬비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교역이나 FTA 협상 등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의 인구(4,760만 명) 및 4위의 GDP(3,779억 달러)를 가지고 꾸준한 경제성장률(3.1~4.9%)을 유지하고 있음.
 -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임.
 - 향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선점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KREI 현안분석 제15호

한·콜롬비아 FTA 발효, 농업분야 파급영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7. 28.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